



퇴직연금의 이해 (6): 퇴직연금제도 운영 관계자의 책무와 감독

오병국 연구원

■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¹⁾에서는 퇴직연금 사용자, 사업자, 정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자의 책무와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- 근퇴법은 제7장 책무 및 감독 편에서 사용자·사업자·정부의 책무, 사용자·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.

■ 퇴직연금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가입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책무가 부여되고, 가입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퇴직연금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됨.

-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.
- 게다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됨.

■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법령 및 계약준수 의무, 충실의무가 부여됨.

- 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.
-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용관리 혹은 자산관리 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.
-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됨.
 -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, 가입자 또는 사용자 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
 - 가입자의 성명·주소 등의 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

1) 이하 '근퇴법'으로 통칭함.

–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

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년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함.

– 개인퇴직계좌도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이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의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임.

●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,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

●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.

●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.

■ 정부도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,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며, 근로자의 급여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함.

■ 또한, 근퇴법은 퇴직연금 사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.

●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근퇴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음.

– 퇴직연금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·감독하기 위한 근거를 둔 것임.

●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근퇴법의 규정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, 근퇴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을 명할 수 있음.

●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해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할 수 있음.

●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퇴법에서 규정한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·임직원에 대한 주의·견책·감봉·정직·면직,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,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 정지,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음.